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
심사보고서

2018. 11. 29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8.11.19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18.11.20.

다. 상정일자 :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(2018.11.29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 : 기획예산과장 박창열】

가. 제안이유

지방자치단체 간 호혜적 협력 방안 모색을 통해 주민체감 행정서비스를 확산하고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「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」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운영규약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목적 및 기능(제2조~제3조)

○ 구성 및 임원(제4조~제6조)

○ 회의 및 의결(제7조~제8조)

○ 사무국 설치 및 업무(제13조~제14조)

○ 재원 및 부담금(제16조~제17조)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조희옥)

○ 본 동의안은

지방자치단체 간 호혜적 협력 방안 모색을 통해 주민체감 행정서비스를 확산하고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「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」를 구성하고 「지방자치법」 제152조제2항에 따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운영규약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○ 주요내용으로는

- 안 제2조부터 3조에는 협의회 목적과 기능을 규정하였고,
-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협의회의 구성 및 임원임기 등에 관한 사항이며,
-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회의 소집과 의결사항을 명시하였음.
- 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는 사무국 설치 및 업무에 대한 사항이며,
- 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는 협의회 재원 및 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○ 검토의견으로는

- 1995년 지방선거 이후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음.
- 그러나, 교통과 통신의 발달, 인구 유동성의 증가, 생활권역과 행정권역의 불일치 등으로 행정이 광역화됨에 따라 관할 구역을 벗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자치단체 간 협력이나 공동처리가 불가피하며, 지역이기주의 팽배로 지역 간 갈등이 종종 야기됨으로써 이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.

- 따라서, 지방자치법 제152조를 근거로 하여 구성된 「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」는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이끌어내어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운영규약안 제3조 "기능"에 있어 근거법령인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95조(행정협의회의 구성기준) 제1항과 「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5조(협의사항)에 따른 구체적인 기능에 부합하는지, 추상적인 기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능이 내포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.
- 또한, 「지방자치법」 제165조(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)에 의거 가입된 전국시장·군수·구청장협의회(226개 지방자치단체 가입),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(25개구 가입)와의 기능 및 사업내용 연계성 등을 비교분석하여 변별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인 협력으로 주민 복리 증진 및 광역적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의회의 명확한 공동 목표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 타 : 없 음